

목 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2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3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3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3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입인)	3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3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4
가. 권유기간.....	4
나. 피권유자의 범위	4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5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5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5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5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5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6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6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6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6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7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8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8
<input type="checkbox"/> 정관의 변경	74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79
확인서.....	85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8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3월 11일

권 유 자: 성 명: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00
(수표동, 시그니처타워스 서울)
전화번호: 02-6961-1114

작 성 자: 성 명: 권은미
부서 및 직위: IR팀 / 차장
전화번호: 02-6961-127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6년 03월 11일	라. 주주총회일	2026년 03월 26일
마. 권유 시작일	2026년 03월 14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승인			
<input type="checkbox"/> 정관의변경			
<input type="checkbox"/> 이사의선임			
<input type="checkbox"/>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의결권 있는 주 식(보통주)	3,498,834	13.44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소유주식은 자기주식이므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소유 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기준임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박찬구	최대주주의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2,039,629	7.84	최대주주의 친인척	-
박준경	최대주주의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2,183,120	8.39	최대주주의 친인척	-
박주형	최대주주의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322,561	1.24	최대주주의 친인척	-
박철완	최대주주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2,599,132	9.98	최대주주	-
박은형	최대주주의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129,587	0.50	최대주주의 친인척	-
박은경	최대주주의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133,800	0.51	최대주주의 친인척	-
박은혜	최대주주의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149,700	0.58	최대주주의 친인척	-
허경수	최대주주의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16,677	0.06	최대주주의 친인척	-
백종훈	당해회사 임원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7,000	0.03	당해회사 임원	-
윤용현	계열회사 임원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1,500	0.01	계열회사 임원	-
김선규	계열회사 임원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1,000	0.00	계열회사 임원	-
송유선	계열회사 임원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2,489	0.01	계열회사 임원	-
이정복	계열회사 임원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2,100	0.01	계열회사 임원	-
구자성	계열회사 임원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3,299	0.01	계열회사 임원	-
계	-	-	7,591,594	29.16	-	-

※ 상기 소유 주식수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됨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입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박성재	의결권 있는 주 식(보통주)	7	직원	-	-
윤성욱	의결권 있는 주 식(보통주)	10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구분	주식의	주식	회사와의	권유자와의	비고
----	----	-----	----	------	-------	----

(회사명)		종류	소유수	관계	관계	
소달리앤코 코리아 유한회사	법인	-	-	없음	없음	-
유)한국엠앤에이	법인	-	-	없음	없음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소달리앤코 코리아 유한회사	Christopher Nordquist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삼성동 아셈타워)	외국인 기관주주 대상 의결권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02-6001-3336 (정성엽 한국대표)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유)한국엠앤에이	한용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1길 16, 7층(논현동, 우노빌딩)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02-571-0111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6년 03월 11일	2026년 03월 14일	2026년 03월 26일	2026년 03월 26일

※ 권유 종료일은 2026년 03월 26일 제49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임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5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보통주 보유 전체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당사는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사회의 제안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위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회사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주주환원 달성을 위해 2025년 2월 10일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매출성장률 6%, 2030년까지 ROE 10%, 2026년까지 주주환원률 30~40%(별도 기준)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주주환원 계획에 따라 제49기 결산 배당은 436억원의 현금 배당안을 마련하였으며 자기주식 취득(300억원, 소각목적)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제49기 주주환원 전체 규모는 총736억원으로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 41.9%입니다.

더불어 2024년에 발표한 기보유 자기주식의 소각 계획에 따라 3차년도 분인 874,417주 소각할 계획이며 소각 완료시 주주가치제고계획으로 주주분들께 약속드린 2,624,417주 주식소각 이행을 완료하게 됩니다. 잔여 자기주식은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된 개정 상법을 준수하여 회사의 보유/소각/처분 계획에 대해 주주 승인 절차를 거친 뒤, 투명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성과를 보다 장기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부문별 전문성(재무/금융, ESG, 법률/정책 등)을 고려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10명의 이사(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7인)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내이사 1인을 사외이사로 변경하여 전체 이사 10인 중 8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을 고려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회사는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제안한 이사 후보자는 미래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적의 후보자입니다. 주주님께서도 이사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를 일괄적으로 선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장기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안도 적극 찬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주님들의 상세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당사 홈페이지에 '제49기 정기주주총회 참고자료'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kkpc.com>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금호석유화학	https://www.kkpc.com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처타워스 동관 12층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경영지원팀 (우편번호 04542)
 ·전화번호 : 02-6961-1446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6년 3월 14일 ~ 3월 26일 제49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6년 3월 26일(목) 오전 9시
장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100 시그니처타워스 동관 4층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49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5년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며,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걸쳐 수익성 압박이 지속된 한 해였습니다. 금호석유화학 또한 쉽지 않은 경영 여건에 직면하였으나, 전사적인 원가 절감 노력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연결 기준 매출 6조 9,151억원, 영업이익 2,718억원을 기록하며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비교적 건조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단기적인 환경 변화에 흔들리기보다,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며 핵심 사업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와 고성능 타이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여수공장에 연산 3만5천톤 규모의 SSBR 병행 생산 설비 투자를 완료하며 고부가 합성고무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RSM SSBR, Bio-based SSBR 등 친환경·차세대 소재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며 변화하는 고객 요구와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호미쓰이화학은 MDI 20만톤 증설, 금호폴리캠은 EPDM 7만톤 증설을 완료하며 그룹 전반의 사업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함께 강화하였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 ·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 ·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49(당)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48(전)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및 종속기업들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49(당)기말		제48(전)기말	
자산					
Ⅰ. 비유동자산			5,732,925,076,987		5,629,299,643,493
유형자산	5,30	3,926,965,811,684		4,101,539,761,816	
사용권자산	6	137,865,093,948		75,788,098,737	
투자부동산	7	113,632,435,748		112,523,006,697	

무형자산	8	41,580,169,635		38,106,806,544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9,30,31	1,175,140,579,739		993,547,311,18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26,28	139,470,491,702		137,131,067,47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28,30	82,275,660,739		67,953,816,586	
순확정급여자산	20	56,251,587,418		36,070,582,227	
장기대여금및기타채권	12,28,30	17,106,319,675		15,124,557,785	
이연법인세자산	26	41,037,623,714		48,893,071,994	
기타비유동자산	13	1,599,302,985		2,621,562,452	
II. 유동자산			2,741,554,103,400		2,710,939,308,766
재고자산	4,11	858,849,008,765		958,420,279,555	
파생상품자산	18,28	-		4,261,378,711	
매출채권	12,28,31	725,142,368,589		868,847,945,776	
대여금및기타채권	12,28,30,31	457,848,872,746		373,869,540,566	
현금및현금성자산	28,32	650,436,032,913		429,285,910,593	
기타유동자산	13	47,260,524,516		73,931,548,026	
당기법인세자산	26	2,017,295,871		2,322,705,539	
자산총계			8,474,479,180,387		8,340,238,952,259
자본					
I. 지배기업소유주지분			6,245,291,877,385		6,037,777,043,046
자본금	1,14	167,455,885,000		167,455,885,000	
자본잉여금	14	403,097,632,973		403,535,295,129	
자본조정	14	(25,648,871,136)		(31,917,585,69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4	(42,530,152,161)		(72,509,311,430)	
이익잉여금	14,15	5,742,917,382,709		5,571,212,760,038	
II. 비지배지분			1,245,533,072		4,446,028,460
자본총계			6,246,537,410,457		6,042,223,071,506
부채					
I. 비유동부채			861,461,231,250		763,538,998,860
장기미지급금및기타채무	19,28,31	99,072,179,929		102,443,036,830	
장기미지급비용		31,106,797,539		17,960,744,710	
차입금	16,28,30	447,017,694,644		427,931,288,413	
리스부채	17,28	119,428,332,849		52,042,832,362	
순확정급여부채	20	7,413,347,696		14,017,564,456	
이연법인세부채	26	101,058,134,063		98,847,790,014	
충당부채	21	3,171,320,953		4,008,480,167	
기타부채	22	53,193,423,577		46,287,261,908	
II. 유동부채			1,366,480,538,680		1,534,476,881,893
매입채무	28,31	418,583,579,900		543,605,102,636	
미지급금및기타채무	19,28,31	368,103,079,607		414,828,640,525	
차입금	16,28,30	432,751,533,008		454,671,424,551	
리스부채	17,28	8,849,889,661		10,541,469,564	
미지급법인세	26	30,523,897,514		24,530,740,664	
충당부채	21	2,613,722,239		1,807,668,320	
기타유동부채	22	101,431,832,586		84,430,161,480	
단기금융보증부채	28,31	3,623,004,165		61,674,153	
부채총계			2,227,941,769,930		2,298,015,880,753
부채와자본총계			8,474,479,180,387		8,340,238,952,259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49(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48(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및 종속기업들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49(당)기	제48(전)기
I. 매출액	4,23,31	6,915,145,099,921	7,155,003,786,012
II. 매출원가	23,31	6,311,215,400,033	6,569,448,551,818
III. 매출총이익		603,929,699,888	585,555,234,194
판매비와관리비	23	332,101,190,342	312,750,926,606
IV. 영업이익		271,828,509,546	272,804,307,588
기타수익	24,28,31	109,434,003,953	121,833,650,881
기타비용	24,28,31	147,144,916,502	88,379,374,406
금융수익	25,28	53,972,100,872	77,488,480,681
금융비용	25,28	70,293,841,792	69,556,345,344
지분법손익	9	131,052,982,957	93,422,863,565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	348,848,839,034	407,613,582,965
법인세비용	26	57,914,058,385	59,011,569,563
VI. 당기순이익		290,934,780,649	348,602,013,402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		290,936,738,220	348,621,508,633
비지배지분순이익		(1,957,571)	(19,495,231)
VII. 주당손익	27		
보통주 기본주당이익		11,300	13,328
우선주 기본주당이익		11,391	13,423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49(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48(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및 종속기업들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49(당)기	제48(전)기
I. 당기순이익		290,934,780,649	348,602,013,402
II. 기타포괄손익		24,356,989,913	(13,830,481,514)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3,220,055,997	(46,714,325,148)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20	5,513,738,257	(18,935,596,54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10,28	5,739,099,865	(27,565,751,309)
지분법이익잉여금		1,967,217,875	(212,977,295)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1,136,933,916	32,883,843,634
해외사업환산손익		276,623,439	(753,644,190)
지분법자본변동	9	10,860,310,477	33,637,487,824
III. 총포괄이익		315,291,770,562	334,771,531,888
지배기업소유주지분 총포괄이익		315,293,728,133	334,791,027,119
비지배지분 총포괄이익(손실)		(1,957,571)	(19,495,231)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49(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48(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및 종속기업들

(단위 : 원)

과 목	주식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비지배지분	총 계
2024.01.01 (전기초)		167,455,885,000	403,535,295,157	(38,186,300,246)	(94,969,478,818)	5,391,661,538,830	4,522,602,381	5,834,019,542,304
<총포괄손익>								
전기손이익		-	-	-	-	348,621,508,633	(19,495,231)	348,602,013,40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대체	10	-	-	-	17,142,075,063	(17,142,075,06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 익	10,28	-	-	-	(27,565,751,309)	-	-	(27,565,751,309)
해외사업환산손익		-	-	-	(753,644,190)	-	-	(753,644,190)
지분법자본변동	9	-	-	-	33,637,487,824	-	-	33,637,487,824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212,977,295)	-	(212,977,295)
재측정요소	20	-	-	-	-	(18,935,596,544)	-	(18,935,596,544)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의 거래>								
종속기업 유상증자 참여		-	(28)	-	-	2	144,512,026	144,512,000
자기주식의 취득		-	-	(50,024,989,770)	-	-	-	(50,024,989,770)
자기주식의 소각		-	-	56,293,704,325	-	(56,293,704,325)	-	-
연차배당	15	-	-	-	-	(76,485,934,200)	(201,590,716)	(76,687,524,916)
2024.12.31 (전기말)		167,455,885,000	403,535,295,129	(31,917,585,691)	(72,509,311,430)	5,571,212,760,038	4,446,028,460	6,042,223,071,506
2025.01.01 (당기초)		167,455,885,000	403,535,295,129	(31,917,585,691)	(72,509,311,430)	5,571,212,760,038	4,446,028,460	6,042,223,071,506
<총포괄손익>								
당기손이익		-	-	-	-	290,936,738,220	(1,957,571)	290,934,780,64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대체	10	-	-	-	13,103,125,488	(13,103,125,48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 익	10,28	-	-	-	5,739,099,865	-	-	5,739,099,865
해외사업환산손익		-	-	-	276,623,439	-	-	276,623,439
지분법자본변동	9	-	-	-	10,860,310,477	-	-	10,860,310,477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1,967,217,875	-	1,967,217,875
재측정요소	20	-	-	-	-	5,513,738,257	-	5,513,738,257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의 거래>								
종속기업투자의 증가		-	(202,988,896)	-	-	-	(2,996,979,104)	(3,199,968,000)
종속기업 지분취득		-	(234,673,260)	-	-	-	-	(234,673,260)
자기주식의 취득		-	-	(50,024,731,538)	-	-	-	(50,024,731,538)
자기주식의 소각		-	-	56,293,446,093	-	(56,293,446,093)	-	-
연차배당	15	-	-	-	-	(57,316,500,100)	(201,558,713)	(57,518,058,813)
2025.12.31 (당기말)		167,455,885,000	403,097,632,973	(25,648,871,136)	(42,530,152,161)	5,742,917,382,709	1,245,533,072	6,246,537,410,457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49(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48(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및 종속기업들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49(당)기	제48(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15,308,386,329	322,334,793,729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32	729,973,372,886	302,190,765,786
이자의 수취		27,160,074,412	34,899,178,785
이자의 지급		(39,043,404,031)	(41,871,717,672)
배당금의 수취		40,707,206,424	48,770,809,475
법인세납부		(43,488,863,362)	(21,654,242,645)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72,532,430,750)	(259,014,074,088)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772,246,000,000)	(768,577,058,592)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684,822,000,000	954,418,845,350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500,000,000)	-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1,500,000	1,0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8,519,479,117)	(9,561,697,36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5,321,279,620	5,236,761,50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5,000,005,57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8,440,327,796	10,092,615,003
단기대여금의 대여		(6,010,850,355)	-
단기대여금의 회수		7,356,386,956	213,685,530
장기대여금의 대여		(826,000,000)	(519,000,000)
장기대여금의 회수		106,839,606	3,413,556,867
공동및관계기업투자지분의 취득		(80,187,346,688)	(39,129,268,000)
공동및관계기업투자지분의 처분		-	18,945,372,288
유형자산의 취득		(194,402,300,702)	(436,189,485,536)
유형자산의 처분		231,251,739	1,666,948,409
무형자산의 취득		(1,218,927,336)	(384,393,271)
무형자산의 처분		775,454,546	375,197,727
사업결합및연결범위변동으로인한현금의증감		(11,010,625,540)	-
기타투자자산의 취득		-	(16,154,000)
기타투자자산의 처분		334,064,300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1,269,420,286)	(90,595,990,828)
단기차입금의 순차입		(58,804,172,815)	(13,133,834,503)
사채의 발행		99,545,568,400	99,557,326,800
장기차입금의 차입		54,986,780,000	131,045,0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102,399,959,996)	(156,384,854,276)
장기차입금의 상환		(183,337,000)	(17,955,612,008)
리스부채의 상환		(10,992,492,894)	(9,990,611,685)
파생상품거래정산에 따른 현금유입		4,119,000,000	4,134,000,000
파생상품거래정산에 따른 현금유출		-	(1,302,000,000)
배당금의 지급	15	(57,516,074,443)	(76,684,927,386)
자기주식의 취득		(50,024,731,538)	(50,024,989,770)
비지배지분의 유상증자 참여		-	144,512,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356,412,973)	4,121,695,825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II+III+IV)		221,150,122,320	(23,153,575,362)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29,285,910,593	452,439,485,955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50,436,032,913	429,285,910,593

주석

제 49 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48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및 종속기업들

1. 연결실체의 개요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 또는 '당사'라 함)와 당사가 지배하고 있는 금호피앤비화학주식회사 등 20개 종속기업(이하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및 종속기업들을 일괄하여 '연결실체'라 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1976년 12월 10일 설립되어 합성고무제품과 합성수지제품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1985년 6월 1일 한국합성고무공업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1988년 1월 22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KRX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1월 1일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금호케미칼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02년 1월 1일자로 특수관계자인 금호개발주식회사로부터 화학사업부를 양수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그 동안 수차례의 유·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167,456백만원(우선주자본금 15,117백만원 포함)이고,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등이 지배기업 보통주식의 29.16%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외의 지분은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1-2. 종속기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종속기업	금호피앤비화학 ㈜	금호개발상사㈜ (*1)	금호그린바이오 창원㈜(*2)	금호그린바이오 부산㈜(*3)	금호폴리켐㈜	코리아에너지 발전소㈜	철도솔라㈜	㈜강원학교태양 광	금호티앤엘㈜ (*4)	
소재지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업종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무역 및 오퍼업 등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재활용업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전기관련제품 및 기타발전업	전기관련제품 및 기타발전업	전기관련제품 및 기타발전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결산일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자산	1,813,018	53,422	5,964	5,678	912,346	30,893	4,451	13,355	189,150	
부채	242,300	6,718	3,219	3,250	231,784	2,973	324	1,979	50,408	
자본	1,570,718	46,704	2,745	2,428	680,562	27,920	4,127	11,376	138,742	
매출액	1,641,442	60,628	5,831	979	729,822	4,181	705	6,886	98,477	
당기순이익(손실)	(44,988)	2,117	701	(504)	60,586	6,725	290	2,278	10,311	
투자 주식수	지배지분	21,000,000주	1,175,000주	300,000주	300,000주	4,300,000주	1,449,037주	712,537주	1,517,000주	18,710,860주
	비지배지분	-	-	-	-	-	58,363주	400주	-	-
	합계	21,000,000주	1,175,000주	300,000주	300,000주	4,300,000주	1,507,400주	712,937주	1,517,000주	18,710,860주
지배기업 지분율	100%	100%	100%	100%	100%	96.13%	96.07%	96.13%	100%	

(단위 : 백만원)										
종속기업	금호리조트㈜	케이앤에이치텍 수가스㈜ (*5)	금호페트로홀딩 스 유한공사 외 1개사 (*6)(*10)	금호홀딩스(H.K.) 외 1개사(*7)	KUMHO PETROCHEMICAL MALAYSIA Sdn. Bhd.	PT KUMHO PETROCHEMICAL INDONESIA(*8)	KKPC AMERICA Inc(*9)	Kumho Petrochemical Germany GmbH (*11)	KUMHO P&B CHEMICALS EUROPE GmbH(*12)	
소재지	한국	한국	중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국	독일	독일	
업종	휴양콘도 운영업	산업용가스 제조업	해외투자 지주회사	해외투자 지주회사	석유화학 제품 판매	석유화학 제품 판매	석유화학 제품 판매	석유화학 제품 판매	석유화학 제품 판매	
결산일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자산	742,519	18,653	6,988	96,671	553	1,002	485	59	83	
부채	436,620	12,410	1,422	44,547	121	45	131	18	2	
자본	305,899	6,243	5,566	52,124	432	957	354	41	81	
매출액	107,028	3,205	5,436	11,787	645	439	1,086	-	-	
당기순이익(손실)	30,067	(75)	248	(4,919)	(11)	72	8	(65)	(3)	
투자 주식수	지배지분	17,855,000주	209,032주	3,835,380주	64,470,192주	1,161,400주	10,000주	230,000주	65,000주	25,000주
	비지배지분	-	-	-	-	-	-	-	-	-
	합계	17,855,000주	209,032주	3,835,380주	64,470,192주	1,161,400주	10,000주	230,000주	65,000주	25,000주
지배기업 지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전기 중 금호피앤비화학㈜가 금호개발상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2,000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 당기 중 금호개발상사㈜가 금호그린바이오창원㈜의 지분 100%를 11,331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3) 전기 중 금호개발상사㈜가 설립출자로 3,000백만원에 신규취득하였으며, 지분율은 100%입니다.

(*4) 당기 중 지배기업의 금호티앤엘㈜ 보유주식 1,000,000주의 감자대가로 5,00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지분율은 100%로 전기말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5) 당기 중 지배기업인 금호석유화학㈜가 비지배지분 주주인 한국특수가스 보유주식 104,515주를 3,200백만원에 전량 매입해 지분율이 100%로 증가 하였습니다.

(*6) 금호페트로홀딩스유한공사의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금호페트로홀딩스유한공사의 종속기업인 금호석유화학무역(상해)유한공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금액입니다.

(*7) 금호홀딩스(H.K.)의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금호홀딩스(H.K.)의 종속기업인 ASIANA WEIHAI COUNTRY CLUB&RESORT Co.,Ltd 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금액입니다.

(*8) 전기 중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인 금호페트로홀딩스유한공사가 설립출자로 852백만원에 신규취득하였으며, 지분율은 100%입니다.

(*9) 전기 중 설립출자로 317백만원에 신규취득하였으며, 지분율은 100%입니다.

(*10) 전기 중 지배기업의 금호페트로홀딩스 보유주식 16,889,247주의 감자대가로 22,847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지분율은 100%로 전전기말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11) 당기 중 설립출자로 108백만원에 신규취득하였으며, 지분율은 100%입니다.

(*12) 당기 중 설립출자로 85백만원에 신규취득하였으며, 지분율은 100%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국제회계기준)를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 개정서,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2-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조기퇴직률,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충당부채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석 3-27'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미래와 현재의 보증의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선의 추정치는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2-3. 재무제표 확정

연결실체의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는 2026년 3월 11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6년 3월 26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3-1-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연결실체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동 개정사항은 회계목적상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평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 추정 및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측정일에 현물환율을 추정해야 하며,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추정기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개정) -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의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 등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다른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차이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한' 문단에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여,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의 보험계약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3-1-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금융상품 분류 및 측정

(1) 전자이체를 통해 결제되는 금융부채의 제거

동 개정사항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는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를 결제일 이전에 소멸(그리고 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동 회계정책은 선택하는 경우 동일한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결제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2) 금융자산의 분류

-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계약조건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요소와 연계된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에 기업이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평가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

동 개정사항은 '비소구(non-recourse)'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여, 특히 현금흐름을 수취할 기업의 최종적인 권리가 특정 자산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으로 계약상 제한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은 비소구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을 다른 거래와 구별하는 특성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금융상품에서 복수의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트랑슈)을 사용하는 금융자산 보유자들에 대한 지급의 우선순위가 워터폴(waterfall) 지급구조를 통해 설정됨으로써 신용위험의 집중과 서로 다른 트랑슈 보유자들 간의 손실의 불균등 배분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개정사항은 모든 복수의 채무상품 거래가 복수의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거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고 있으며, 기초자산 집합에는 동 기준서의 분류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자산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3)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요구사항은 보고기간에 제거된 투자와 관련된 공정가치손익과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와 관련된 공정가치 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하면서, 보고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된 공정가치 손익을 공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조건

동 개정사항은 기본대여위험 및 원가의 변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우발사건의 발생(또는 미발생)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계약조건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요구사항은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각 종류별 그리고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각 종류별로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적용할 것이 요구됩니다.

- 모든 개정사항을 동시에 적용하고 해당 사실을 공시

- 금융자산 분류에 대한 개정사항만 조기적용하고 해당 사실을 공시

동 개정사항은 특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적용해야 합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개정) - 위험회피회계 적용

동 개정사항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문단을 참조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제거 손익

동 개정사항은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를 참조하도록 하고 관련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차이를 최초 인식시점에 손익인식하지 않는 경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실무적용지침 문단 IG14의 용어를 문단 28의 용어와 일치시켜 기준서 내 용어의 일관성을 개선하였습니다.

- 신용위험 공시

동 개정사항은 문단 IG1에서 실무적용지침이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며, 신용위험 공시와 관련한 문단 IG20B를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개정)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 및 거래가격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리스부채 제거시 발생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가격의 정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일관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채무제표'(개정)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동 개정사항은 사실상 대리인의 판단과 관련한 기준서 제1110호 문단 B73과 B74의 표현을 개정하여 기준서 문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였으며, 문단 B74에 제시된 사실상의 대리인 관계는 판단이 요구되는 하나의 사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 원가법

동 개정으로 '원가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원가'로 대체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개정)

- 기준서 제1109호의 자가사용 요구사항은 전력의 생산원천이 자연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인도받는 계약에 대해 동 기준서 문단 2.4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특정된 특성을 충족하는 자연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o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가능한 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

o 위험회피수단에 사용된 수량 가정과 동일한 수량 가정을 사용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측정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기준서 제1107호는 특정된 특성을 충족하는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계약에 관한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자가사용 예외에 대한 개정사항은 최초적용일의 사실과 상황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합니다.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지정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제정)

기준서 제1118호는 기준서 제1001호를 대체합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기준서 제1001호의 많은 요구사항을 변경 없이 승계하였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001호의 일부 문단은 기준서 제1008호 및 제1107호로 이동하였으며, 기준서 제1007호 및 제1033호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 손익계산서에서 특정 범주와 정의된 중간합계의 표시
- 재무제표 주석 내에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s) 관련 공시 제공
- 통합 및 세분화 개선

새로운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준서 제1007호 및 제1033호의 개정 내용과 개정된 기준서 제1008호 및 제1107호는 기준서 제1118호가 적용되는 시점에 유효합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소급 적용이 요구되며 특정 경과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새로운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회사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수익과 비용의 범주별 재분류로 인해 영업손익의 표시 및 산출 방식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2.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배분되지 않은 항목은 주로 본사 건물과 같은 공통자산, 본사 관련 비용 및 법인세 자산과 부채입니다. 부문의 자본적 지출은 보고기간 중유형자산과 무형자산(영업권 제외)의 취득으로 발생한 총 원가입니다.

3-3. 연결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입니다.

3-3-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을 포함)이며, 지배력은 다음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배기업이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피투자자에 대한 힘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보유
-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사실상 지배력 보유여부 판단시에는 1) 지배기업이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분산정도, 2) 지배기업과 다른 주주 등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3)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4)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피투자자에 대한 잠재적인 의결권은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우에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피투자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지배기업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를 평가할 때 자신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여부를 판단시 1) 의사결정권한의 범위, 2) 다른 당사자들이 갖는 권리, 3)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보상, 4) 다른 지분 보유에 따른 이익변동에 대한 노출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실체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일에 제공한 자산, 발행한 지분증권, 인수하거나 발생시킨 부채의 공정가치의 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조건부 대가 지급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 자산·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청산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사업결합이 단계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은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가 지불할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된 조건부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되지 않으며, 후속적으로 정산될 때 자본내에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와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손익은 제거됩니다. 미실현손실은 이전된 자산의 손상 여부를 우선 고려하고 제거됩니다.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되었습니다.

3-3-2.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자본거래, 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불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액 중 취득한 지분 해당액과의 차이는 자본에 계상됩니다. 비지배지분에 대한 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익 또한 자본에 반영됩니다.

3-3-3. 종속기업의 처분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공정가치는 해당 지분이 후속적으로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의 최초 인식시 장부금액이 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전에 계상하고 있던 기타포괄손익의 금액은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를 직접 처분하였을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인식되었던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손익 또는 자본에 반영됩니다.

3-4.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지배력은 없는 모든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내지 50%를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 기업입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투자금액은 취득시 식별된 영업권을포함하며, 손상차손누계액 차감 후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투자가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중 비례적 금액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관계기업 투자의 취득 이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의 손익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관계기업의 잉여금 변동액 중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잉여금에 인식합니다. 취득 후 누적변동액은 투자금액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이 기타 무담보 채권을 포함한 관계기업 투자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게 되면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을 위해 대납하였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마다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연결실체는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동 손상차손 금액은 손익계산서 상 '관계기업에 대한 손상차손'으로 하여 별도로 표시됩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도 그 거래가 이전된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동일하게 제거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나 유의적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의 지분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5. 공동약정

공동약정은 연결실체가 다른 공동약정 참여자와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공동의 지배력을 행

사하는 약정입니다. 공동약정은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합니다.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고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약정입니다.

공동영업의 경우 공동영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공동기업의 경우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투자자산은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명시된 지분법 적용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3-6. 비지배지분과의 거래

연결회사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를 연결회사 주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액 중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불한 대가의차이는 자본에 계상됩니다.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또한 자본에서 처리됩니다.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상실한 후 이전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이에 따른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7. 부문별 보고

영업부문은 최고경영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본부별로 공시되고 있습니다(주석 4 참조). 최고경영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3-8. 기능통화 및 외화환산

연결실체는 재무제표를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9.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10.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3-11. 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역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12.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과 결합되어 있는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전진적으로 중단됩니다.

(4)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전진적으로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3-13.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최초 인식후에는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기존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건물	5 ~ 60년	차량운반구	4 ~ 10년
건축물	5 ~ 40년	공구와기구	4 ~ 5년
기계장치	2 ~ 30년	비품	2 ~ 15년

연결실체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14.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차입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에서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15.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이며 폐기나 처분이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1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합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10년
개발비	5년
기타의무형자산	4년, 5년,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 중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후속적 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3-17. 리스

연결실체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만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식별되는 자산이 존재하고,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3-17-1.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예: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며 매수선택권이 없는 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예:새것일 때의 가치가 US\$5,000정도 이하)의 경우 리스이용자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에 대한 선택은 기초자산 유형별로,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선택은 리스별로 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하며,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장부금액이 측정되고, 이자비용은 리스기간에 걸쳐 인식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인센티브는 차감),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로 구성되며,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합니다.

3-17-2. 리스제공자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며,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달려있습니다.

리스제공자는 정액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며,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그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며 후속적으로 리스순투자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합니다.

3-18.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고자산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19.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한 결과 발생한 손상차손과 모든 감모손실은 손상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손상차손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3-20. 금융자산의 손상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한편 최초 인식 이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의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21. 비금융자산의 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 급여에서 생기는 자산,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영업권을 포함하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23.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24.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약정의 설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차입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은 범위내에서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이 인출될 때까지 해당 금액은 이연됩니다.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차입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금액을 유동성서비스에 대하여 선지급한 것으로 자본화하며, 관련된 약정기간동안 상각됩니다.

차입금은 연결실체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25.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 측정시 최초인식 금액의 미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6. 종업원급여

3-26-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아니한 급여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6-2. 퇴직급여 :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연결실체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연결실체의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연결실체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6-3.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6-4. 해고급여

당사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 없이 명시적으로 약속하거나, 당사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3-26-5.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 이후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로서,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최선의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총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총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3-28. 배당금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9. 납입자본

보통주와 상환의무 없는 우선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며,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또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3-30. 수익

수익은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3-30-1. 수행의무의 식별

고객과의 계약에서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3-30-2. 한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연결실체는 판매로 인하여 부담하는 보증책임에 대한 충당부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30-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실체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회사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3-30-4. 유의적인 금융요소

연결실체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개시할 때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31.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이자수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여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충당부채의 상각액,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여 인식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32.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32-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32-2. 이연법인세

연결실체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 및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이러한 세율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과세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을 사용하되, 미래과세소득이 영(0)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미래예상 누진세율 체계에서 가장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33.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며, 수익관련 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34. 주당손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계산하고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전환사채 등 모든 희석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35.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연결실체는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배출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결과 발생하는 배출부채는 연결실체가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분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이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의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의 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36. 영업권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됩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관계기업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3-4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6년 3월 1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재 무 상 태 표

제 49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49 기말	제 48 기말
자 산			
Ⅰ. 비유동자산			3,073,958,062,140
유형자산	4,5,28	1,748,345,284,588	1,860,823,991,619
사용권자산	4,6	56,828,029,662	24,875,606,366
투자부동산	7,28	95,583,251,997	94,601,032,444
무형자산	4,8	24,981,220,972	21,253,540,215
종속기업,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9,28,29	848,724,792,363	793,360,830,78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24,26	139,081,312,202	136,718,414,83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26,28	79,088,140,739	66,001,016,586
순확정급여자산	19	50,744,142,441	32,574,981,931
장기대여금및기타채권	12,26	7,299,014,609	8,045,215,206
이연법인세자산	24	22,497,151,527	35,690,996,745
기타비유동자산	13	785,721,040	1,313,489,318

II. 유동자산			1,546,190,462,769		1,597,829,986,282
재고자산	4,11	501,185,366,202		592,344,497,096	
파생상품자산	26	-		4,261,378,711	
매출채권	26,29	440,350,160,108		567,859,633,708	
대여금및기타채권	12,26,28,29	103,981,009,849		58,096,231,433	
현금및현금성자산	26,30	473,846,687,502		325,214,150,849	
기타유동자산	13	26,827,239,108		50,054,094,485	
자 산 총 계			4,620,148,524,909		4,673,089,102,327
자 본					
자본금	1,14	167,455,885,000		167,455,885,000	
자본잉여금	14	298,065,365,852		298,065,365,852	
자본조정	14	(25,066,504,713)		(31,335,219,26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14	(89,179,688,198)		(108,039,653,894)	
이익잉여금	14,15	3,035,427,039,521		2,983,215,252,929	
자 본 총 계			3,386,702,097,462		3,309,361,630,619
부 채					
I. 비유동부채			410,928,772,895		379,845,834,045
장기미지급금및기타채무	18,26	19,502,403		19,516,557	
차입금	16,26,28	334,524,231,644		346,191,580,667	
리스부채	17,26	53,162,460,768		19,229,743,864	
장기미지급비용		21,871,034,289		12,742,552,803	
총당부채	20	1,351,543,791		1,662,440,154	
II. 유동부채			822,517,654,552		983,881,637,663
매입채무	26,29	276,363,958,617		394,331,455,563	
미지급금및기타채무	18,26,29	136,056,710,101		175,312,654,660	
차입금	16,26,28	334,331,000,492		347,730,892,653	
리스부채	17,26	4,411,400,695		5,276,275,052	
미지급법인세	24	16,671,643,962		14,603,879,156	
총당부채	20	1,960,363,439		1,202,763,554	
기타유동부채	20	52,722,577,246		45,423,717,025	
부 채 총 계			1,233,446,427,447		1,363,727,471,708
부 채 및 자 본 총 계			4,620,148,524,909		4,673,089,102,327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손익계산서

제 49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48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주석	제 49 기	제 48 기
I. 매출액	4,21,29	4,571,978,509,755	4,854,274,755,589
II. 매출원가	21,29	4,164,608,863,621	4,456,519,593,472
III. 매출총이익		407,369,646,134	397,755,162,117
판매비와관리비	21	209,248,733,364	208,119,757,613
IV. 영업이익		198,120,912,770	189,635,404,504
기타수익	5,22,26,29	133,705,813,391	183,183,059,193
기타비용	5,22,26,29	99,168,349,466	60,554,701,597
금융수익	23,26	29,716,061,433	37,364,844,916
금융비용	23,26	47,353,265,918	48,369,218,616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	215,021,172,210	301,259,388,400
법인세비용	24	39,290,269,155	40,301,814,028
VI. 당기순이익	4	175,730,903,055	260,957,574,372
VII. 주당이익	25		
보통주 기본및희석주당이익		6,820	9,972
우선주 기본및희석주당이익		6,920	10,087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제 49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48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주석	제 49 기	제 48 기
Ⅰ. 당기순이익		175,730,903,055	260,957,574,372
Ⅱ. 기타포괄손익		8,950,795,426	(40,690,621,996)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8,950,795,426	(40,690,621,996)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19	3,193,955,218	(13,127,308,43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10,24	5,756,840,208	(27,563,313,559)
Ⅲ. 총포괄이익		184,681,698,481	220,266,952,376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49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48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총 계
2024.01.01 (전기초)		167,455,885,000	298,065,365,852	(37,603,933,823)	(97,618,415,398)	2,885,306,700,582	3,215,605,602,213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260,957,574,372	260,957,574,37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10,24,26	-	-	-	(27,563,313,559)	-	(27,563,313,55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대체	10	-	-	-	17,142,075,063	(17,142,075,063)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19,24	-	-	-	-	(13,127,308,437)	(13,127,308,437)
<자본에 직접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15	-	-	-	-	(76,485,934,200)	(76,485,934,200)
자기주식의 취득	14	-	-	(50,024,989,770)	-	-	(50,024,989,770)
자기주식의 소각	14	-	-	56,293,704,325	-	(56,293,704,325)	-
2024.12.31 (전기말)		167,455,885,000	298,065,365,852	(31,335,219,268)	(108,039,653,894)	2,983,215,252,929	3,309,361,630,619
2025.01.01 (당기초)		167,455,885,000	298,065,365,852	(31,335,219,268)	(108,039,653,894)	2,983,215,252,929	3,309,361,630,61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175,730,903,055	175,730,903,05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10,24,26	-	-	-	5,756,840,208	-	5,756,840,20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대체	10	-	-	-	13,103,125,488	(13,103,125,488)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19,24	-	-	-	-	3,193,955,218	3,193,955,218
<자본에 직접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15	-	-	-	-	(57,316,500,100)	(57,316,500,100)
자기주식의 취득	14	-	-	(50,024,731,538)	-	-	(50,024,731,538)
자기주식의 소각	14	-	-	56,293,446,093	-	(56,293,446,093)	-
2025.12.31 (당기말)		167,455,885,000	298,065,365,852	(25,066,504,713)	(89,179,688,198)	3,035,427,039,521	3,386,702,097,462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금흐름표

제 49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48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49 기		제 48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00,332,628,356		210,078,447,10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30	480,267,346,425		145,772,023,357	
이자의 수취		13,791,040,884		13,294,232,250	
이자의 지급		(28,876,283,832)		(31,122,941,296)	
배당금의 수취		59,561,033,111		97,344,036,159	
법인세납부		(24,410,508,232)		(15,208,903,369)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6,842,494,951)		(143,409,869,783)
단기대여금의 회수		256,835,536		85,017,983	
장기대여금의 대여		(425,000,000)		(31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33,996,000,000)		(47,894,000,000)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83,822,000,000		67,894,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108,459,541,281)		(190,716,806,777)	
유형자산의 처분		211,262,954		671,001,094	
무형자산의 취득		(4,789,304,216)		(374,393,271)	
무형자산의 처분		459,090,910		-	
종속, 공동및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55,363,961,578)		(1,379,167,952)	
종속, 공동및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22,846,8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7,319,479,117)		(9,561,697,36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5,321,279,620		5,236,761,50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5,000,005,57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8,440,327,796		10,092,615,003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4,706,854,095)		(52,276,531,079)
사채의 발행		99,545,568,400		99,557,326,800	
단기차입금의 순증감		(58,467,473,111)		16,309,513,130	
장기차입금의 차입		11,500,000,000		68,500,000,000	
파생상품거래정산 현금유입		4,119,000,000		858,0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78,000,000,000)		(103,788,000,000)	
파생상품거래정산 현금유출		-		(1,302,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6,064,702,116)		(5,903,044,569)	
배당금의 지급		(57,314,515,730)		(76,483,336,670)	
자기주식 취득		(50,024,731,538)		(50,024,989,77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50,742,657)		2,273,626,221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 + II + III + IV)			148,632,536,653		16,665,672,460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25,214,150,849		308,548,478,389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73,846,687,502		325,214,150,849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49 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48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이하 "당사" 또는 "회사")는 1976년 12월 10일 설립되어 합성고무제품과 합성수지제품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1985년 6월 1일 한국합성고무공업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1988년 1월 22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KRX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1월 1일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금호케미칼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02년 1월 1일자로 특수관계자인 금호개발주식회사로부터 화학사업부를 양수하였습니다.

당사는 그 동안 수차례의 유·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167,456백만원(우선주자본금 15,117백만원 포함)이고, 당기말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등이 당사 보통주식의 29.16%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외의 지분은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조기퇴직률,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충당부채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석 3-2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미래와 현재의 보증의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선의 추정치는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2-3. 재무제표 확정

당사의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는 2026년 3월 11일 이사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며, 2026년 3월 26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3-1-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당사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동 개정사항은 회계목적상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평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 추정 및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측정일에 현물환율을 추정해야 하며,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추정기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개정) -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의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 등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다른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차이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한' 문단에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여,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의 보험계약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3-1-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금융상품 분류 및 측정

(1) 전자이체를 통해 결제되는 금융부채의 제거

동 개정사항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는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를 결제일 이전에 소멸(그리고 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동 회계정책은 선택하는 경우 동일한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결제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2) 금융자산의 분류

-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계약조건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요소와 연계된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에 기업이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평가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

동 개정사항은 ‘비소구(non-recourse)’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여, 특히 현금흐름을 수취할 기업의 최종적인 권리가 특정 자산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으로 계약상 제한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은 비소구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을 다른 거래와 구별하는 특성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금융상품에서 복수의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트랑슈)을 사용하는 금융자산 보유자들에 대한 지급의 우선순위가 워터폴(waterfall) 지급구조를 통해 설정됨으로써 신용위험의 집중과 서로 다른 트랑슈 보유자들 간의 손실의 불균등 배분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개정사항은 모든 복수의 채무상품 거래가 복수의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거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고 있으며, 기초자산 집합에는 동 기준서의 분류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자산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3)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요구사항은 보고기간에 제거된 투자와 관련된 공정가치손익과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와 관련된 공정가치 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하면서, 보고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된 공정가치 손익을 공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조건

동 개정사항은 기본대여위험 및 원가의 변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우발사건의 발생(또는 미발생)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계약조건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요구사항은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각 종류별 그리고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각 종류별로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

용됩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적용할 것이 요구됩니다.

- 모든 개정사항을 동시에 적용하고 해당 사실을 공시
 - 금융자산 분류에 대한 개정사항만 조기적용하고 해당 사실을 공시
- 동 개정사항은 특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적용해야 합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개정) - 위험회피회계 적용

동 개정사항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문단을 참조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제거 손익
- 동 개정사항은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를 참조하도록 하고 관련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차이를 최초 인식시점에 손익인식하지 않는 경우 공시
-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실무적용지침 문단 IG14의 용어를 문단 28의 용어와 일치시켜 기준서 내 용어의 일관성을 개선하였습니다.

- 신용위험 공시
- 동 개정사항은 문단 IG1에서 실무적용지침이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며, 신용위험 공시와 관련한 문단 IG20B를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개정)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 및 거래가격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리스부채 제거시 발생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가격의 정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일관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개정)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동 개정사항은 사실상 대리인의 판단과 관련한 기준서 제1110호 문단 B73과 B74의 표현을 개정하여 기준서 문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였으며, 문단 B74에 제시된 사실상의 대리인 관계는 판단이 요구되는 하나의 사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 원가법

동 개정으로 '원가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원가'로 대체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개정)

- 기준서 제1109호의 자가사용 요구사항은 전력의 생산원천이 자연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인도받는 계약에 대해 동 기준서 문단 2.4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특정된 특성을 충족하는 자연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o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가능한 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

o 위험회피수단에 사용된 수량 가정과 동일한 수량 가정을 사용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측정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개정)

기준서 제1107호는 특정된 특성을 충족하는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계약에 관한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자가사용 예외에 대한 개정사항은 최초적용일의 사실과 상황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합니다.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지정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제정)

기준서 제1118호는 기준서 제1001호를 대체합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기준서 제1001호의 많은 요구사항을 변경 없이 승계하였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001호의 일부 문단은 기준서 제1008호 및 제1107호로 이동하였으며, 기준서 제1007호 및 제1033호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 손익계산서에서 특정 범주와 정의된 중간합계의 표시
- 재무제표 주석 내에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s) 관련 공시 제공
- 통합 및 세분화 개선

새로운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준서 제1007호 및 제1033호의 개정 내용과 개정된 기준서 제1008호 및 제1107호는 기준서 제1118호가 적용되는 시점에 유효합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소급 적용이 요구되며 특정 경과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새로운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회사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수익과 비용의 범주별 재분류로 인해 영업손익의 표시 및 산출 방식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2. 영업부문

당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배분되지 않은 항목은 주로 본사 건물과 같은 공통자산, 본사 관련 비용 및 법인세 자산과 부채입니다. 부문의 자본적 지출은 보고기간 중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영업권 제외)의 취득으로 발생한 총 원가입니다.

3-3.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4. 기능통화 및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6.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

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3-7. 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

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8. 납입자본

보통주와 상환의무 없는 우선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며,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 또는 회사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3-9.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과 결합되어 있는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위험회피회계

회사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회사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전진적으로 중단됩니다.

(4)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전진적으로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3-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최초 인식후에는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기존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건물	20 ~ 40년	차량운반구	5년
건축물	20 ~ 40년	공구와기구	5년
기계장치	2 ~ 20년	비품	5년

당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11. 차입원가

당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이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차입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에서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12.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20~40년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이며 폐기나 처분이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13.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합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10년
개발비	5년
기타의무형자산	5년,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할지를 매 회계기간 중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후속적 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3-14. 리스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만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식별되는 자산이 존재하고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3-14-1.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예: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며 매수선택권이 없는 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예:새것일 때의 가치가 US\$5,000정도 이하)의 경우 리스이용자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에 대한 선택은 기초자산 유형별로,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선택은 리스별로 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리스의 내재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하며,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장부금액이 측정되고, 이자비용은 리스기간에 걸쳐 인식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로 구성되며,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합니다.

3-14-2. 리스제공자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며,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달려있습니다.

리스제공자는 정액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며,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그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며 후속적으로 리스순투자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합니다.

3-15.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고자산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16.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한 결과 발생한 손상차손과 모든 감모손실은 손상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손상차손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3-17. 금융자산의 손상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한편 최초 인식 이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의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18. 비금융자산의 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 급여에서 생기는 자산,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영업권을 포함하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

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19.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20.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약정의 설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차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위내에서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이 인출될 때까지 해당 금액은 이연됩니다.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차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금액을 유동성서비스에 대하여 선지급한 것으로 자본화하며, 관련된 약정기간동안 상각됩니다.

차입금은 회사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21. 종업원급여

3-21-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아니한 급여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1-2. 퇴직급여 :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법적의무나 의 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회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가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1-3.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1-4. 해고급여

당사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 없이 명시적으로 약속하거나, 당사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3-21-5.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

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 이후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로서,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최선의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3-23. 배당금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4. 수익

수익은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3-24-1. 수행의무의 식별

고객과의 계약에서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3-24-2. 한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당사는 판매로 인하여 부담하는 보증책임에 대한 충당부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24-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당사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니다.

-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회사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3-24-4. 유의적인 금융요소

회사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 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 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25.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금융수익은 이자수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여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충당부채의 상각액,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여 인식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3-26-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6-2. 이연법인세

당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

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 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 및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거래 당시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27.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며, 수익관련 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28. 주당손익

당사는 보통주 및 우선주에 대하여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계산하고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 및 우선주 각각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전환사채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 및 우선주 각각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29.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당사는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배출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결과 발생하는 배출부채는 회사가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분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이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의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의 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6년 3월 1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의 변경
- 제2-2호 의안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 제2-3호 의안 :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
- 제2-4호 의안 : 자기주식 보유, 처분에 관한 규정 명확화
- 제2-5호 의안 : 개정 상법 반영 등 그 외 정관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의안번호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1호	제24조 (이사의 수와 선임방법) 3.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u>상법 제382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24조 (이사의 수와 선임방법) 3. (삭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의안번호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2호	제31조 (이사회) 2. 이사회 의장은 <u>대표이사 회장이 되며, 이사회 의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한다.</u>	제31조 (이사회) 2. 이사회 의장은 <u>독립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의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u> <u>이사회가 독립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의장 이외에 독립이사를 대표하는 선임독립이사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u>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직을 분리하여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이사회 의장 직무 대행에 관한 내용 신설, 이사회 소집 권한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불명확한 용어 정비
	제32조 (이사회회의 소집)	제32조 (이사회회의 소집)	

	<p>1.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u>그러나 이사회 의장은 이를 다른 이사에 위임할 수 있다.</u></p> <p>2.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각 이사에 대하여 <u>소집일 이일 전에</u>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한다.</u></p>	<p>1.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u>(후문 삭제)</u></p> <p>2.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각 이사에 대하여 <u>이사회 회일이일</u>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에는 <u>는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u></p>	
제2-3호	<p>제24조 (이사의 수와 선임방법)</p> <p>1. 당 회사의 이사는 10명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으며, <u>사외이사는</u> 최소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p>	<p>제24조 (이사의 수와 선임방법)</p> <p>1. 당 회사의 이사는 10명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으며, <u>독립이사는</u> 최소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p>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p>제26조 (이사의 보선)</p> <p>3. <u>사외이사가</u>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4조에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6조 (이사의 보선)</p> <p>3. <u>독립이사가</u>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4조에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8조의3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p> <p>1.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u>사외이사</u>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된다.</p>	<p>제28조의3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p> <p>1.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u>독립이사의</u>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된다.</p>	
	<p>제34조 (위원회)</p> <p>1.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p> <p>1) 감사위원회</p> <p>2) <u>사외이사</u> 후보추천위원회</p> <p>3) 경영위원회</p> <p>4) ESG 위원회</p> <p>5) 내부거래위원회</p> <p>6) 보상위원회</p> <p>7)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위원회</p>	<p>제34조 (위원회)</p> <p>1.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p> <p>1) 감사위원회</p> <p>2) <u>독립이사</u> 후보추천위원회</p> <p>3) 경영위원회</p> <p>4) ESG 위원회</p> <p>5) 내부거래위원회</p> <p>6) 보상위원회</p> <p>7)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위원회</p>	
	<p>제35조 (감사위원회)</p> <p>4. <u>사외이사의</u>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사외이사</u>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5조 (감사위원회)</p> <p>4. <u>독립이사의</u>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독립이사</u>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5조의2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선임)</p> <p>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u>사외이사</u>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p>	<p>제35조의2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선임)</p> <p>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u>독립이사</u>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p>	

	것을 정할 수 있다.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 (감사위원회) 2. 감사위원회는 <u>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u>	제35조 (감사위원회) 2. 감사위원회는 <u>3인 이상의 독립이사로 구성한다.</u>	감사위원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신설)		제35조 (감사위원회) 5. <u>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 이상을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u> 6. <u>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u> 7. <u>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u> 8. <u>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	상법 제542조의12 반영하여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규정 정비
제2-4호	제10조의4 (자기주식 처분, 소각) 1. <u>이사회는 상법 제342조 및 제343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처분 및 소각에 대한 주요사항을 결의한다.</u> 2. <u>이사회는 전 항의 결의를 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전략적 제휴, 합작회사의 설립,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조달, 임직원에 대한 보상 및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u>	제10조의4 (자기주식 보유, 처분, 소각) 1. <u>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 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또는 법률상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u> 2. <u>이사회는 상법 제342조 및 제343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처분 및 소각에 대한 사항을 결의한다.</u>	상법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처분 목적 규정
제2-5호	제17조 (총회의 소집) 2. <u>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여수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u>	제17조 (총회의 소집) 2. <u>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여수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u>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규정 정비

		<u>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한다.</u>	
제19조 (의결권의 대리 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당 회사의 주주에 한하여 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u>서류</u>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결권의 대리 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당 회사의 주주에 한하여 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u>서면 또는 전자문서</u>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u>7. 본 조 제6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u>	제8조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u>7. (삭제)</u>		배당기산일 관련 상법 개정 내용 반영하여 규정 정비
제10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u>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발행된 것으로 본다.</u>	제10조의2 (동등배당) <u>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u>		
제12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u>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의 규정에 준용한다.</u>	제12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u>4.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u>		
제13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u>4. 신주인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u>	제13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u>4. (삭제)</u>		
제40조 (분기배당) <u>4.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금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u>	제40조 (분기배당) <u>4. (삭제)</u>		
제13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3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u>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u>		전자등록제도 관련 규정 정비
제14조 (명의개서 대리인)	제14조 (명의개서 대리인)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2019.03.29) (신설)	제15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1. 당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당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전자증권법 반영 규정 정비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1.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그 말소를 정지한다. 2. 당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 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3. 전항 규정 이외의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2주 전에 미리 공고한 후 삼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변경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6조 (기준일) 1.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 관련 규정 정비
제17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말일의 익일로부터 삼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이를 소집한다.	제17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주주총회는 제16조 제1항의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 지정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 개최시기 관련 규정 정비
제39조 (이익배당) 1. 이익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며 미지급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이익배당) 1. 이익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3.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미지급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한다.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 고를 위하여 배당기준일, 분기배당기준일 등 관련 규정 정비
제40조 (분기배당) 1.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제40조(분기배당) 1.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법 제	

	<p>12에 의한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p> <p>2. 제 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p>	<p>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p> <p>2.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신설)		<p>부칙(2026.3.26)</p> <p>1. (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2. (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3.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 제1항, 제26조 제3항, 제28조의3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5 조 제2항, 제4항, 제35조의2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4. (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3항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 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5.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 제8항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상법 시행 시기 고려 효력 발생 시점 명시</p>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양정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양정원	1961.10.11	해당	해당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 역
		기간	내용	
양정원	KB증권 사외이사	2007-2013	삼성자산운용 상무	없음
		2013-2018	삼성자산운용 전무	
		2019-2021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CEO	
		2023-현재	KB증권 사외이사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p>1. 재무/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 본 후보자는 삼성자산운용 연기금본부장 겸 기금운용총괄 전무 및 CMO 마케팅솔루션총괄 전무,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CEO 등을 지내며 쌓은 경험과 재무/금융 분야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2.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 본 후보자는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을 포함한 대주주와의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이 적법하고 투명한 책임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감독하겠습니다. 특히 재무/금융, 위험관리, 경영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3. 회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에 기여 본 후보자는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인지하고 이를 기준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사회에 참여하겠습니다. 회사의 비전 및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ion : 화학 그 이상의 가치로 공동의 미래를 창조하는 솔루션 파트너 - Mission : 고객을 위해 - 최고의 솔루션, 최상의 시너지로 고객가치를 높임 주주를 위해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익극대화로 주주가치를 제고 임직원을 위해 - 기업과 구성원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성장을 실현 인류와 환경을 위해 - 인류와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녹색화학을 실천 <p>4. 법적 의무 및 윤리강령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에 충실할 것이며 특히 회사가 선포하고 있는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p>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p>양정원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 이해관계가 없습니다.</p>
--

후보자는 1987년 삼성생명보험에 입사하여 1999년까지 근무하였으며,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자산운용에서 인사, 관리, 기획, 평가팀장, 투자풀운용팀장, 리스크관리 팀장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및 팀장을 거쳐, CIO 주식운용본부장 상무, 연기금본부장 겸 기금운용총괄 전무, CMO 마케팅솔루션총괄 전무직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CEO를 역임하였습니다.

후보자는 2024년 3월 당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생명보험,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의 투자자로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자본시장 전문가이면서, 대형회사의 CEO 를 역임한 경영에 관한 역량을 갖춘 후보입니다.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후보자는 이사회는 물론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에서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상법 개정에 따라 당사는 2026년 9월까지 분리선출된 감사위원이 2명인 상태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후보자를 재선임함으로써 선제적으로 개정 상법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이사회는 후보자가 선임된 이후 지금까지 이사회에 기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후보자가 갖춘 투자기관의 경험을 토대로 투자자(주주)의 시각과 피투자회사에 대한 기대를 이사회에 조언하고, 이사회가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균형있게 조율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이사회는 후보자가 갖춘 투자자로서의 경험과 시각, 최고경영자로서 보여준 역량과 경험이 차별적이면서도 균형적인 통찰력을 이사회에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하며 당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2024.3.-2025년 참석률 : 이사회 100%, 감사위원회 100%,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00%, 보상위원회 100%]

[제4호 의안] 사외이사 2명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 사외이사 김재희크리스틴 선임의 건
- 제4-2호 의안 : 사외이사 박순애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재희크 리스틴	1969.12.06	해당	해당없음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박순애	1965.10.02	해당	해당없음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 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 역
		기간	내용	
김재희크 리스틴	이화다이아몬드공 업(주) 대표이사	2000-2002	BOOZ Allen Hamilton Associate	없음
		2002-2010	이화다이아몬드공업(주) 이사/ 전무이사	
		2010-현재	이화다이아몬드공업(주) 대표이사	

		2009-2026	이화다이아몬드공구(주) 사내이사*	
		2019-2021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소재부품 발전위원회	
		2020-2022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중견기업 정책위원회 민간위원	
		2013-현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박순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KG모빌리티 사외이사	2004-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없음
		2015-2018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2016-2022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위원	
		2020-2022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2021-2025	국제연합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UN CEPA) 위원	
		2024-현재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협력위원장	
		2024-현재	한국공공경영학회 회장	

* 김재희크리스틴 후보는 2026년 3월 20일 이화다이아몬드공업(주)의 자회사인 이화다이아몬드공구(주)의 사내이사를 사임 예정입니다.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4-1	사외이사 김재희크리스틴 선임의 건
-----	--------------------

1. 경영/전략, 리더십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

본 후보자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역사학 학사 및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중견 제조 기업인 이화다이아몬드공업의 이사로, 2010년부터는 최고경영자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경영전문가로서 다양한 사업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및 사업 확장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로서 인권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전략 방향 설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

본 후보자는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을 포함한 대주주와의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이 적법하고 투명한 책임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감독하겠습니다. 특히 경영, 법률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준법 경영에 기여하고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회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에 기여

본 후보자는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인지하고 이를 기준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사회에 참여하겠습니다. 회사의 비전 및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Vision : 화학 그 이상의 가치로 공동의 미래를 창조하는 솔루션 파트너
- Mission : 고객을 위해 - 최고의 솔루션, 최상의 시너지로 고객가치를 높임
- 주주를 위해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익 극대화로 주주가치를 제고
- 임직원을 위해 - 기업과 구성원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성장을 실현
- 인류와 환경을 위해 - 인류와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녹색 화학을 실천

4. 법적 의무 및 윤리강령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에 충실할 것이며 특히 회사가 선포하고 있는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4-2	사외이사 박순애 선임의 건
-----	----------------

1. 환경행정 및 정책 분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
 본 후보자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임 중이며, 과거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위원, UN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위원,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지금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협력위원장, 한국공공경영학회 회장 등 전문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환경행정/정책분석/성과관리 부문의 대표 전문가입니다. 정부, 민간, 학계를 넘나드는 후보자의 다양한 경험이 이사회 및 회사 입장의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
 본 후보자는 회사와의 거래, 경직 등을 포함한 대주주와의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이 적법하고 투명한 책임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감독하겠습니다. 특히 행정, 법률, 정책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준법 경영에 기여하고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회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에 기여
 본 후보자는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인지하고 이를 기준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사회에 참여하겠습니다. 회사의 비전 및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Vision : 화학 그 이상의 가치로 공동의 미래를 창조하는 솔루션 파트너
 - Mission : 고객을 위해 - 최고의 솔루션, 최상의 시너지로 고객가치를 높임
 - 주주를 위해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익 극대화로 주주가치를 제고
 - 임직원을 위해 - 기업과 구성원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성장을 실현
 - 인류와 환경을 위해 - 인류와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녹색 화학을 실천
4. 법적 의무 및 윤리강령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에 충실할 것이며 특히 회사가 선포하고 있는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4-1	사외이사 김재희크리스틴 선임의 건
<p>김재희크리스틴 사외이사 후보는 당사와의 거래, 경직 등에 따른 특정 이해관계가 없습니다.</p> <p>후보자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역사학 학사 및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02년부터 국내 중견 제조기업인 이화다이아몬드공업의 이사로, 2010년부터는 최고경영자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최고경영자로 선임된 이후 이화다이아몬드공업의 성장은 괄목할 만한 수준입니다. 후보자가 최고경영자로 선임된 2010년 말 회사의 연결기준 매출은 1,941억 원, 당기순이익은 76억 원이었는데, 2024년 말 회사의 매출은 3,755억 원, 당기순이익은 498억 원에 달해 각각 2배, 6배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습니다.</p> <p>후보자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서도 역량을 드러내었습니다. 이화다이아몬드공업은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해외 사업을 지속 확장하여 현재 전세계 9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해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받아 2015년에는 은탑훈장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화다이아몬드공업은 반도체소재, 태양광에너지소재, LED패널, CFRP소재, 자동차, 기계부품, 유리광학, 건설/석재 등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활용되는 다이아몬드 공구를 제조하는 회사로, 후보자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지식과 풍부한 협력 경험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p>	

후보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로 활동하며 인권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토대로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사회는 위와 같이 후보자가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최고경영자로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점,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성공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점,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대한 지식과 협력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점, 인권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추고 있는 점에서, 후보자의 선임이 이사회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고 전문적 다양성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서 나아가 회사의 가치와 전략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이사회의 역할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4-2	사외이사 박순애 선임의 건
-----	----------------

박순애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후보자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임 중이며, 각종 학회 및 정부자문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환경행정/정책분석/성과관리 부문의 대표 전문가입니다. 후보자는 과거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위원, UN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위원,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지금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협력위원장, 한국공공경영학회 회장 등 전문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부, 민간, 학계를 넘나드는 후보자의 다양한 경험이 이사회가 제 역할을 다 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후보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정부의 규제 관행에 대해 깊은 이해는, 많은 규제를 적용받는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 입장에서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최초의 여성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며 정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안전 관련 리스크를 초래해 사회적 우려를 야기한 기관들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사회적 가치를 핵심 평가 지표에 반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점은 후보자가 ESG 경영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그 실효성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나 2022년 6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낙점되면서 이사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비교적 짧은 재직기간임에도 후보자는 재직 당시 ESG위원회 위원장으로서 ESG 실무조직을 신설하고 국내외 협의체에 가입하는 등 ESG 경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사회는 후보자가 재직했던 지난 2021년과 비교해 기후변화 위험과 그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국제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었다고 판단하며, 후보자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이 이사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확인서

확인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3월 3 일

보고자 : 양 정 원 (서명인)



확인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3월 5일


보고자 : 김 재 희


(서명 또는 날인)

확인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2월 24일

보고자 : 박 순 예 (서명  인)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10(8)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6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10(7)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0억원
최고한도액	65억원